2026년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청년형)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6.11.12.)

창업특화주택은 창업 관계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주거뿐 아니라 저층부의 코워킹스페이스와 커뮤니티공간을 통해 창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 코워킹스페이스는 별도 운영기관 통해 이용신청 필요하며,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 **(기준일)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2026.11.12.**)로 하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자격증 등 사본 제출 서류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① 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표
  - 창업 7년 이내 기업 공동창업자

  ②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 창업 교육 수료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 추진의사가 있는 자

  ③ 창업기업 근로자 및 창업 지원 관계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 근로자
  - 창업 기획자 소속 근로자,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의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 **(모집인원) 공급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해 입주 대상자에 더해 예비자를 입주 대상자의 2배수까지 모집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폐업, 창업기업 퇴사 등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유의)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퇴거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창업 관계자 1인 거주공간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 주택을 주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필요 시 사업자등록은 1~2층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공급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예비 대상자 발표 및 가계약 체결	자격검증 결과 발표	계약 체결	입주
`26.11.12.	`26.11.19. ~12.10.	`26.12.10.부터 약 1개월 내외	접수 마감 후 약 2개월	자격검증 결과 발표일부터 2주 이내	자격검증 결과 발표일부터 4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2. 공급주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2

■ 주택개요

소 재 지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2 (권선동 1010-5)
건물규모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12층, 지하 2층 - 오피스텔 210호 (전용면적 28.73 ~ 29.40㎡) - 1~2층 코워킹 스페이스 (전용면적 753.04㎡) 및 커뮤니티공간 (전용면적 243.72㎡)



공급 대상	면적(㎡)			임대조건(원)						모집 호수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최대 증액		보증금 1600만원 기준		기본 임대조건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210호	39.40	29.40	10.00	32,600,000	**338,000**	16,000,000	434,900	**3,288,000**	499,000	120
	38.82	28.94	9.88	31,738,000	**329,100**	16,000,000	420,900	**3,222,000**	485,400	40
	38.69	28.81	9.88	31,566,000	**327,300**	16,000,000	418,100	**3,222,000**	482,600	40
	38.66	28.73	9.93	31,566,000	**327,300**	16,000,000	418,100	**3,222,000**	482,600	10

- 기본 임대조건과 보증금 최대 증액 사이에서 보증금 증액 및 월 임대료 감액 조정 가능(전환율 7%)
- 보증금 최소 증액은 기본보증금+5백만원부터이며, 이후 1백만원 단위 증액 가능

※ 가능한 보증금 융자: 12p. 기타 유의사항 중 대출 부분 확인

- 호실 임의 배정 (타입별 면적, 형태, 임대료 차이가 크지 않음)

※ 1차 공고 계약 상황에 따라 모집 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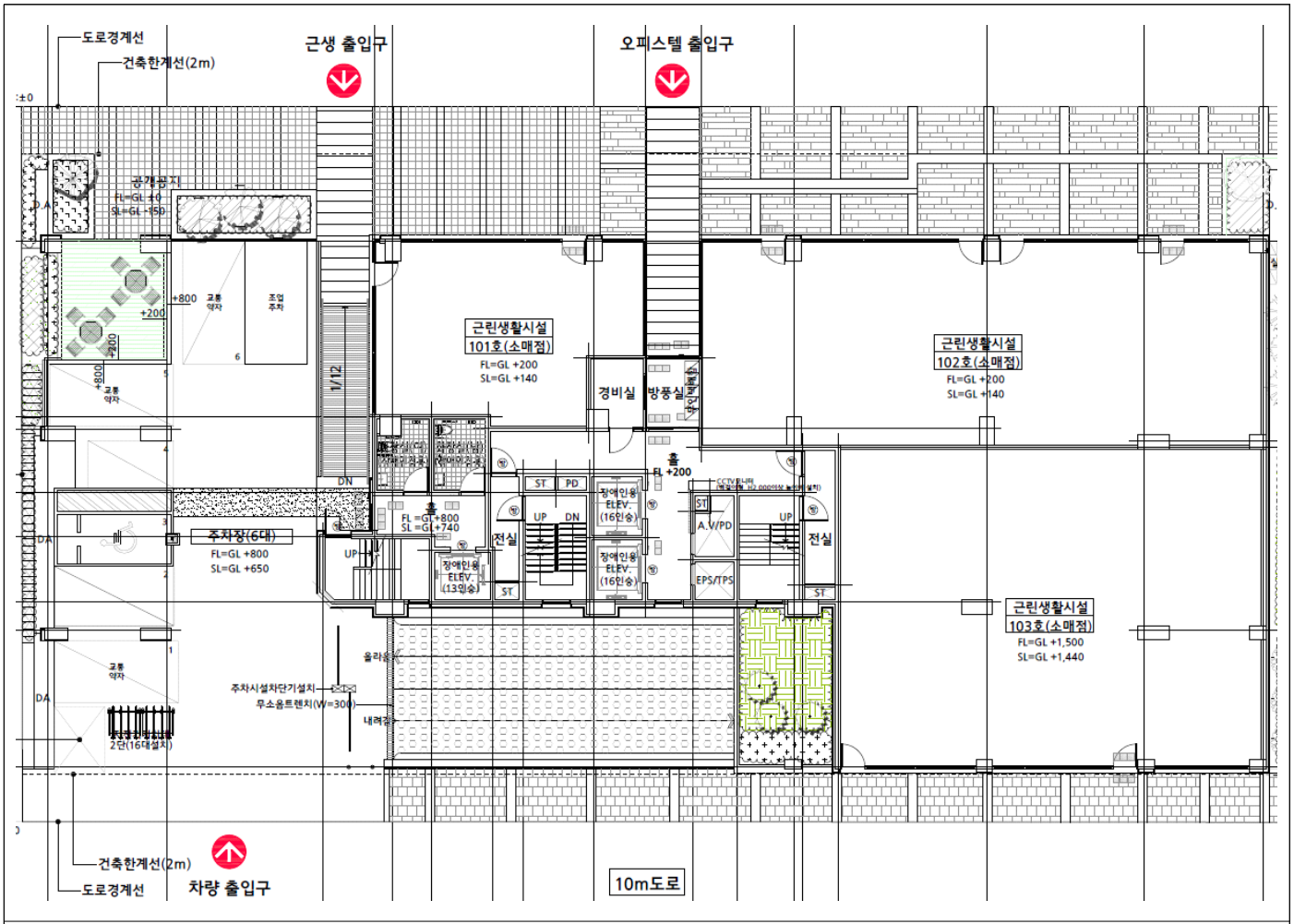
■ 주택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주택 전용 시설 :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쿡탑(2구), 전자렌지, 전열교환기(환기), 붙박이장, 책상, 의자
- 부대시설 :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오픈 라운지, 커뮤니티 미팅 존 공용세탁실, 피트니스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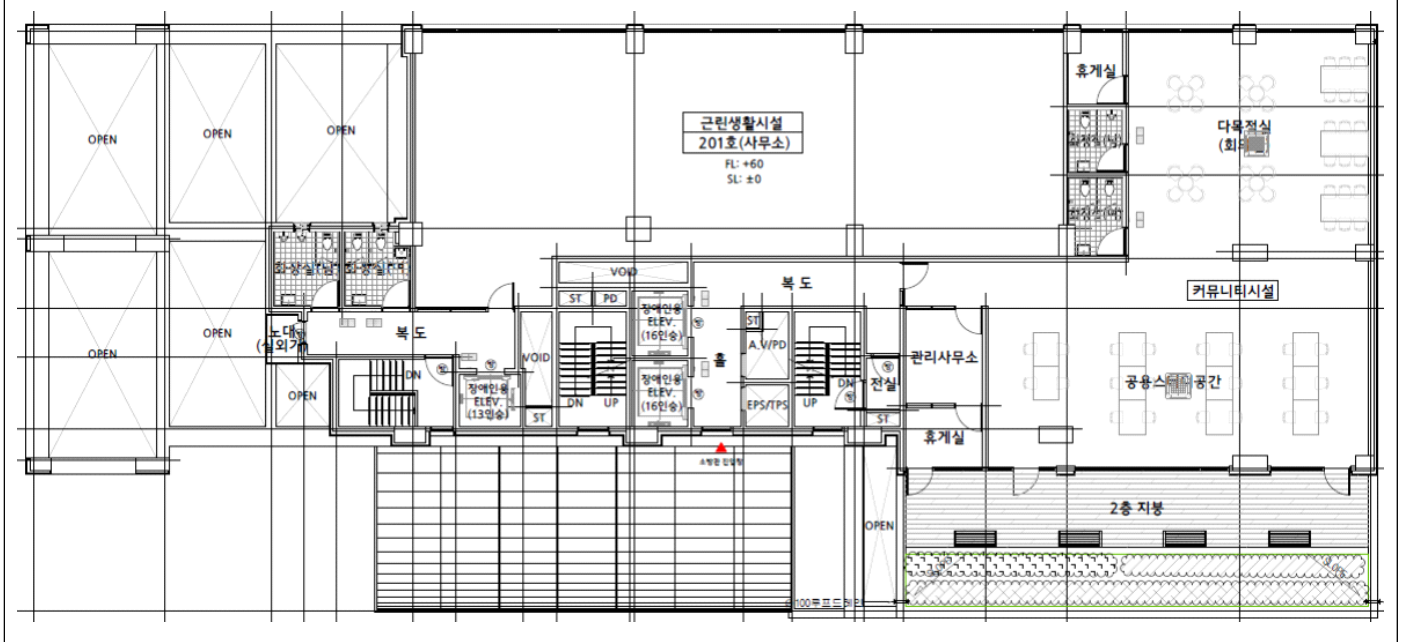
■ 공용 관리비

- 공용시설 점검·관리, 일상 보수, 청소 등의 비용을 세대별 배분해 부과 (내역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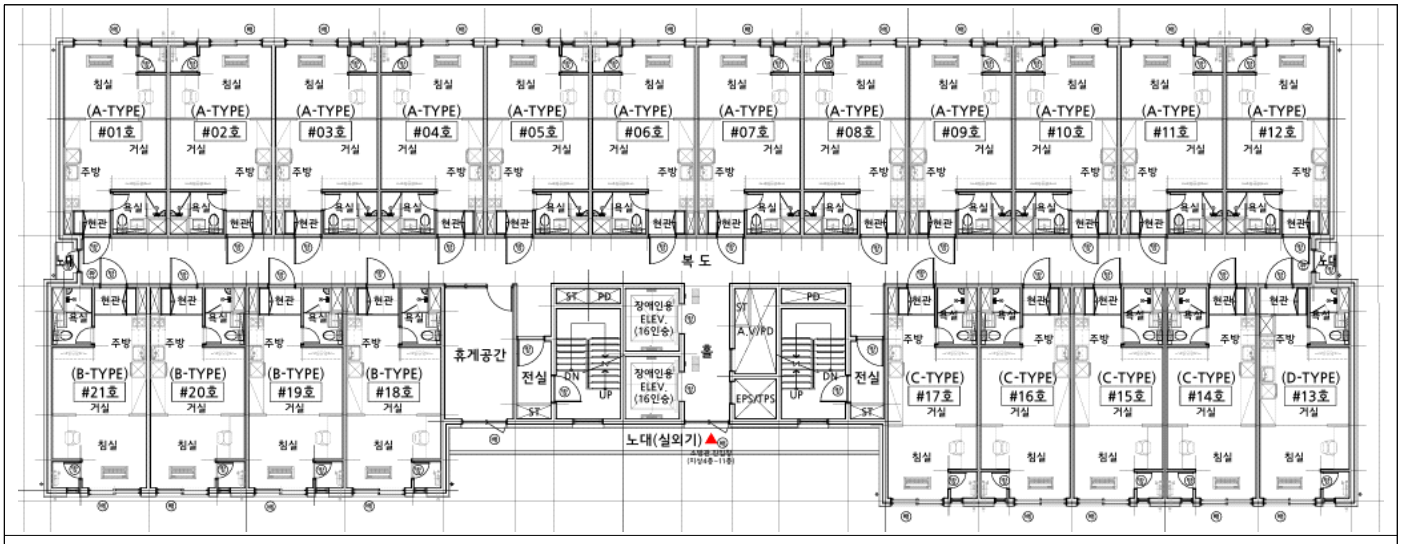
■ 층별 평면도



1층



2층



주거층 (전층 동일)

■ 주택 내부 사진



방 내부



주방



주방과 붙박이장



화장실

3. 입주자격

■ **(기본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4,576,036	6,452,897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소득 판단은 모집공고에 따른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소득자료에 따름

○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구분	기준 금액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 행복주택(청년) 기준	•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수)상기 자격을 충족하면서, 창업자 등으로 아래 증명이 가능한 자**

자격 기준	세부 구분	증빙 자료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 (개인사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한정, 대표 명시)	
	창업 7년 이내 기업 공동창업자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내이사 혹은 공동대표이사 등재 및 지분 보유)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공동대표 명시)
예비 창업자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사업계획서,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확인서 (K-스타트업 발급)	
	창업 교육 수료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사업계획서, 창업 교육 수료증 또는 경진대회 수상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창업 계획과 추진의사가 있는 자	사업계획서(초기 창업자금 조달계획 포함)	
창업기업 근로자 및 창업지원 관계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근로자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명,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용)	
	창업 엑셀러레이팅 기업 근로자	재직기업 창업기획자 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용)	
	창업보육센터(BI) 등의 창업보육 매니저	BI 전담인력 지정 증빙 서류 혹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용)	

※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닌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절차	일정	내용	비고
모집공고	2026.11.12.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홈페이지 (www.yesnanum.org)	홈페이지
신청접수	2026.11.19. ~12.10.	하단 ■신청방법 참고	이메일 접수
자체 입주자 선정 심사	신청접수 마감 후 약 1개월	운영기관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심사 (서류심사)	별도 통지 없음
예비 대상자 발표	신청접수 마감 후 약 1개월	무주택·소득·자산 자격 확인 전 공급주택 세대 수(210세대)의 예비 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개별안내
가계약 체결	예비 대상자 발표 후 약 2주	예비 대상자 주택 내부 확인 및 가계약 체결	개별안내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	신청접수 마감 후 약 2개월	무주택, 소득, 자산 자격 확인 후 입주 호수 3배수까지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	별도 통지 없음
계약 체결	자격검증 결과 발표 후 약 2주	계약서 작성	개별방문
입주	자격검증 결과 발표 후 약 1개월	입주 호수 3배수까지 입주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발표	홈페이지 /개별안내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가계약 시 소정의 가계약금이 있으며, 본 계약 시 가계약금을 포함해 보증금의 10% 납입해야 합니다.

*** 가계약은 입주 자격 확인 전 예비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무효화되고, 가계약금은 가산금 없이 반환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	비고
전자메일	housing@yesnanum.org	신청기간 내 전자메일함에 수신된 메일 중 제출 서류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함

* 접수 결과 및 제출 서류 이상 여부는 신청 이후 업무일 기준 3일 내에 신청자 개별 문자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상 접수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업무일 기준 접수 마감일 3일 전(2026.12.07.)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접수됩니다.

*** **모든 신청서류의 파일명은 성명_생년월일_서류명으로** 합니다. (예시: 나미래_010123_사업계획서)

5. 제출서류 안내

- **모집공고일(2026.11.12.)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열람용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자격 확인 대상자 전원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기본자격 확인 대상자** 1)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2)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자격 확인 대상자 전원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입주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https://forms.gle/DnXVUhz4PsXG41Ev6	링크 문서 작성
사업계획서 혹은 기업소개서	• 비즈니스 모델, 매출 실적, 대표자 학력 및 경력, 특허/투자/정부지원 사업 실적, 각종 기업 인증 내용 포함 • 창업기업 근로자 및 창업지원 관계자는 해당하지 않음	자유 양식

* 온라인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주민등록등표 등본 등 발급서류 3종과 개인정보 동의서 등 작성서류 3종의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합니다. (파일명: 성명_생년월일_공통제출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TIFF 파일(용량 800kb 이하)로 추가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는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며 모든 **서명란은 이름을 정자체로** 씁니다 (**컴퓨터 타이핑 및 태블릿 작성 금지**)

****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작성서류는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창업자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 5p. 자격 기준 및 세부 구분별 해당 증빙자료

■ 가점 적용 대상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각 세대에 베리어프리 설계는 적용되지 않았음	행정복지센터

※ 창업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점 적용 대상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 선정 기준

○ 입주자 선정심사 종합 배점표

구분	총 배점*	항목별 배점	세부 기준
창업자	75	-	신청자 구분별 선정심사 배점표 (10p.) 점수 합산
예비창업자	70	-	
창업기업 근로자	40	-	
창업지원 관계자	30	-	
가점	25	25	GH 주관 창업공모전 입상자
		15	GH 공유오피스 입주(예정)자
		10	유관기관** 주관 프로그램 입상자/수료자
		5	유관기관** 지원 창업지원공간 입주자
합계	100		

* 선정심사 결과 신청자 구분(창업자/예비창업자/창업기업 근로자/창업지원 관계자)별로 특정 분야의 입주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입주자의 협력을 위해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합니다.

** 유관기관 : 수원시 소재 대학 창업보육센터, 수원시 소재 창업 및 기업 지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 9p. 입주자 선정심사 종합 배점표 상 가점 및 10p. 신청자 구분별 선정심사 배점표 항목별 배점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한해 인정됨 (사업계획서 외 증빙자료는 5p. 자격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신청자 구분별 선정심사 배점표

구분	항목	배점	세부 기준	증빙 및 확인자료
창업자	창업 연차	15	창업 연차 적은 초기 창업자 우대	사업자등록증명
	Business Model	15	Business Model의 구체성, 차별성, 시장성	사업계획서(기업소개서)
	기업 성장세	10	최근 3년간 매출 성장	재무제표
			고용 창출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역량	20	대표자 및 핵심 인력 학력 및 경력의 사업 유사성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정부지원사업 선정	선정 확인서 또는 협약서
			외부 투자 유치 실적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지식재산권(특허 등) 보유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증
	사회적 가치	15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인가증, 소셜벤처 판별 통지서 등
			Business Model의 사회문제 접근성	사업계획서(기업소개서)
			신청자의 커뮤니티 친화 (개인)	서면 인터뷰 (온라인 입주 신청서)
예비 창업자	창업 준비도 및 역량	25	예비창업 패키지 선정자	선정 확인서 또는 협약서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이수	교육 수료증 등
			창업경진대회 수상,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 및 등록	경진대회 상장, 특허 등 등록증
			대표자 및 핵심 인력 학력 및 경력의 사업 유사성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Business Model	15	Business Model의 구체성, 차별성, 시장성	사업계획서
	창업 계획 실제성	20	시제품/서비스 개발	사업계획서 (시제품 등 개발 현황 증빙 사진 및 자료 첨부)
			초기 창업자금 확보 여부	정부기관 등 창업지원금 지원 협약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확인서 등
			입주기간 내 창업 계획 구체성	사업계획서
	사회적 가치	10	Business Model의 사회문제 접근성	사업계획서
			신청자의 커뮤니티 친화 (개인)	서면 인터뷰 (온라인 입주 신청서)
창업 기업 근로자	재직 기업 연차	20	창업 연차 적은 초기 창업 기업 근로자 우대	재직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근속 연수	20	현재 재직 기업 장기 근속자 우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발급용)
창업 지원 관계자	근속 연수	15	관련 분야(AC, BI 등) 장기 근속자 우대 (관련 분야 총 근속 연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발급용), 경력증명서
	전문성	15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보유	자격증 사본
			창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자격증 사본
			창업 관련 학과 학위 보유 **	졸업(학위)증명서

* 창업 관련 전문자격 :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 인정 창업지원 관련 전문자격

** 창업 관련 학과 학위 : 창업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공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

6.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 후에라도 퇴거조치 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격검증	•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명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 •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의 50%까지 최대 1,500만원**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든든한주거복지기금**(https://safehome.warmfund.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 신청 금액 및 신청 가능 여부는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운영기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운영기관과 입주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도 인상됩니다. 단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인상 비율은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입주관련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입주자의 경우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자 등 자격 기준을 포함한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5.1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호실별로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인근 도로 등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내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이용은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은 창업 관련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계약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취지에 맞추어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규약 등 위반 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호실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 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내부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호수보다 주차면 수가 적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이 적어 주차면이 남을 경우 입주민 의견을 구해 주차장을 외부개방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운영기관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2길 22, 5층** **운영기관 연락처 : 070-4149-6540**

2026. 11. 12.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계약자] 5년**

라.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5(금융정보등의 제공), 6(자료요청),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20 .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운영기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필수)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출
※ 구분-[부채]-[임대보증금]이란?**임대인으로서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